CHAPTER 01

소방기본법

✔ 회독체크 □□□

제 1 장 총칙

| 제1조 | 목적

(1) 화재를 예방 · 경계하거나 진압

(2) 화재, 재난 · 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· 구급 활동

(3)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을 보호

(4)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

| 제2조 | 정의 (★18[하-특채] 기출)

(1) **소방대상물** : 건축물, 차량, 항구에 매어둔 선박(정박 중인), 선박 건조 구조물, 산림,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(★16/16 특채/15 기출)

(2) **관계지역** :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 화재의 예방 · 경계 · 진압, 구조 ·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

(3) **관계인** :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· 관리자 또는 점유자 (★18[상] 기출)

(4) **소방본부장** : 시 · 도에서 화재의 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
(5) **소방대** :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, 재난 · 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·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: 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, 의용소방대원 (★20/19 특채/16 특채/15 특채 기출)

(6) **소방대장** :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, 재난 · 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(★20 특채 기출)

| 제3조 | 소방기관의 설치 등 (★22/21 특채 기출)

(1) **소방업무** : 시 · 도의 화재 예방 · 경계 · 진압 및 조사, 소방안전교육 · 홍보와 화재, 재난 · 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· 구급 등의 업무(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 : 대통령령)

(2) **소방업무수행** :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
(3) **소방업무의 지휘와 감독** : 시 · 도지사 (시 ·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둠)

(4) **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 · 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· 감독**

| 제4조 |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

설치 · 운영자 (★18[상-특채] 기출)	소방청장,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
설치 목적 (★21 기출)	화재, 재난 · 재해, 구조 · 구급 필요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① 정보의 수집 · 분석과 판단 · 전파 ② 상황관리 ③ 현장 지휘 및 조정 ·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
설치 운영 필요 사항 [행정안전부령]	① 설치장소 : 소방청과 시 ·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 및 운영 ② 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1. 전산 · 통신요원 2. 유 · 무선통신시설 3. 24시간 운영체제
종합상황 실장 업무 [행정안전부령]	① 재난상황의 발생의 신고접수 ②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 사고수습 ③ 하급소방기관에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④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⑤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⑥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
상부보고사항 (서면 · 팩스 · 컴퓨터) [행정안전부령] (★17[하]/17[상] 기출)	①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④ 관공서 · 학교 · 정부미도정공장 · 문화재 · 지하철 또는 지하구 화재 ⑤ 관광호텔,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, 지하상가, 시장, 백화점,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제조소 등,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,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, 연면적 1만5천㎡ 이상인 공장,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⑥ 철도차량,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, 항공기,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⑦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⑧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⑨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, 언론보도 재난 상황,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

| 제4조의2 |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· 운영 (★22/22[특채] 기출)

설치 · 운영자	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
설치 목적	소방시설,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
설치 운영 필요 사항 [대통령]	① 구성인원 : 센터장 포함 18명 이내로 구성 ② 소방기술민원센터 업무 1. 소방시설,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(이하 "소방기술민원"이라 한다)의 처리 2.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 3.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· 관리 4.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5. 그 밖에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③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| 제5조 |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(★21/19 특채/17[상-특채] 기출)

소방박물관	① 설치운영 : 소방박물관 ② 운영목적 :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설치 ③ 설립 운영 필요사항 : 행정안전부령
소방체험관	① 설치운영 : 시 · 도지사 ② 운영목적 :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하기 위해 설치 ③ 설립 운영 필요사항 : 행정안전부령

| 제6조 |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(★22[특채]/20/18[상-특채]/17[하-특채]/17[상-특채] 기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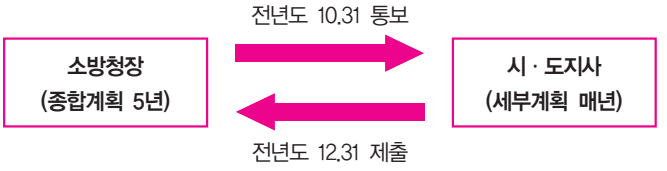

- 종합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
- 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· 도지사에게 통보
- 소방청장은 시 · 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 요청 가능

종합계획 포함사항	①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, 소방기술의 연구 · 개발 및 보급 ③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④ 소방전문인력 양성 ⑤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⑥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(소방자동차 우선통행 포함) ⑦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*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** 1. 재난 · 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2.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 활동에 필요한 조치

✤ 기본 O/X로 체크하기

✔ 회독체크 □ □ □

01.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있다. ⓪ⓧ

02. 소방대상물에는 항해중인 선박도 포함이 된다. ⓪ⓧ

03.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, 관계자, 점유자를 말한다. ⓪ⓧ

04.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, 의용소방대원이 있다. ⓪ⓧ

05. 소방업무의 지휘와 감독은 시 · 도지사가 한다. ⓪ⓧ

06.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은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이 한다. ⓪ⓧ

07. 이재민이 50인 이상, 재산피해액이 10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는 상부에 보고한다. ⓪ⓧ

08. 소방박물관 설립자는 시 · 도지사 소방체험관 설립자는 소방청장이다. ⓪ⓧ

09.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. ⓪ⓧ

10. 시 ·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세우고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. ⓪ⓧ

11.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. ⓪ⓧ

12.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. ⓪ⓧ

기본 OX 해설

2. 소방대상물에는 항해중인 선박도 포함이 된다.
   → 항해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.
3.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, 관계자, 점유자를 말한다.
   →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를 말한다.
7. 이재민이 50인 이상, 재산피해액이 10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는 상부에 보고한다.
   → 이재민이 100인 이상,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는 상부에 보고한다.
8. 소방박물관 설립자는 시 · 도지사 소방체험관 설립자는 소방청장이다.
   → 소방박물관 설립자는 소방청장 소방체험관 설립자는 시 · 도지사이다.
10. 시 ·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세우고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.
   → 시 ·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세우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.

✔ ANSWER 1. O 2. X 3. X 4. O 5. O 6. O 7. X 8. X 9. O 10. X 11. O 12. O

✤ 기출 O/X로 체크하기

✔ 회독체크 □□□

01. 관계지역이란,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말한다. ⓪ⓧ

02. 소방대장이란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, 재난,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본부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. ⓪ⓧ

03.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 · 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· 감독할 수 있다. ⓪ⓧ

04. 시 · 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⓪ⓧ

05. 시 · 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·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. ⓪ⓧ

06. 종합상황실의 설치 목적에는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가 포함된다. ⓪ⓧ

07.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권자는 시 · 도지사이다. ⓪ⓧ

08.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,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 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. ⓪ⓧ

09. 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한다. ⓪ⓧ

10.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⓪ⓧ

11. 종합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한다. ⓪ⓧ

12. 시 ·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⓪ⓧ

기출 OX 해설

1. 관계지역이란,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말한다.
   → 관계지역에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및 그 이웃지역도 포함한다.
2. 소방대장이란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, 재난,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본부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→ 소방대장이란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시 · 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   → 시 · 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6. 종합상황실의 설치 목적에는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가 포함된다.
   →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.
7.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권자는 시 · 도지사이다.
   →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권자는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이다.
9. 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한다.
   → 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한다.
10.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   →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 민원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12. 시 ·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→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.

✔ ANSWER 1. X 2. X 3. O 4. X 5. O 6. X 7. X 8. O 9. X 10. X 11. O 12. X

제 2 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

| 제8조 | 소방력의 기준 등 (★19 특채/17[하-특채]/17[상-특채] 기출)

(1)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[이하 "소방력"(消防力)이라 한다]에 관한 기준 : 행정안전부령

(2) 시 · 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
(3)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·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함

| 제9조 |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

국고보조	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 · 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(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)
대상사업범위 **[대통령령]** (★21 특채/20/18[상-특채]/17[상-특채] 기출)	(1) 소방활동장비, 설비 ① 소방자동차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④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(2)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[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: 행정안전부령]
국고 보조 **기준 가격** **[행정안전부령]**	① 국내조달품 : 정부고시가격 ② 수입물품 :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③ 시가가 없는 물품 :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

| 제10조 |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

소방용수시설의 **설치 및 관리** (★22/20/19 기출)	① 설치 및 유지 관리 : 시 · 도지사(일반수도업자가 설치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 설치 후 직접 유지 및 관리) ② 종류 : 소화전, 급수탑, 저수조 ③ 설치기준 : 행정안전부령

소방용수표지 **[규칙 별표 2]** (★23/18[하] 기출)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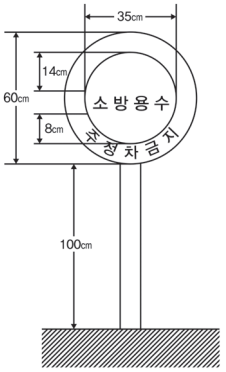 [지상설치 표지]	• **지하 설치** ① 맨홀 지름 648mm 이상 ② 맨홀에는 "소화전 · 주정차금지" 또는 "저수조 · 주정차금지"의 표시를 할 것 ③ 맨홀 부근에는 노란색반사도료로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• **지상 설치** ① 안쪽 문자 : 흰색 (바깥쪽 문자 : 노란색) ② 내측바탕 : 붉은색 ③ 외측바탕 : 파란색 ④ 반사재료를 사용할 것
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**[규칙 별표 3]** (★21/19/18 기출)	• **공통기준** ①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: 수평거리 100[m] 이하 ② 기타지역 : 수평거리 140[m] 이하	
	• **소화전** ① 상수도와 연결 지하식 또는 지상식 ②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65mm	
	• **급수탑**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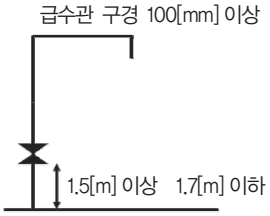 ① 급수배관 구경 100mm 이상 ② 개폐밸브 지상 1.5m 이상 1.7m 이하	
	• **저수조**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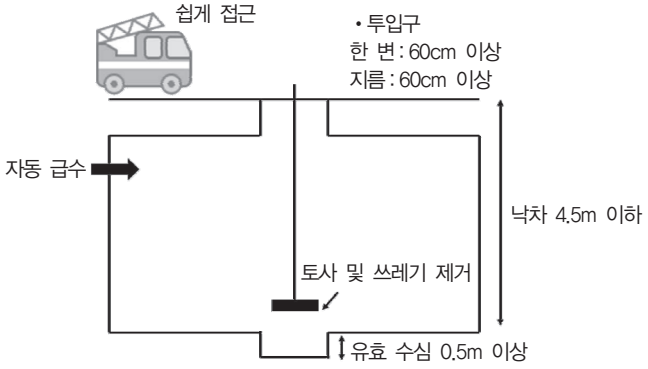 ① 낙차가 4.5m 이하 ② 흡수부분의 수심이 0.5m 이상 ③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 ④ 흡수에 지장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 설비 설치 ⑤ 흡수관의 투입구는 한 변 또 지름 60cm 이상 ⑥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	